

## [재)김해시복지재단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김해시복지재단에서 운영·관리하는 시설물에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월 5일

(재)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



1. 행정예고기간: 2023. 1. 5.~2023. 1. 25. / 20일간

2. 행정예고내용

- 가. 사업내용: (재)김해시복지재단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추가 설치
- 나. 설치목적: 안전사고 사전예방, 시설물 보안 및 관리를 위함
- 다. 설치장소: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외 4개소

연번	구분	장소	수량	종류	방식	비고
합계	(재)김해시복지재단	5개소	18대	네트워크 IR 카메라	고정식	
1	동부노인종합복지관	강당, 식당, 1·3층 출입구	4대			
2	서부노인종합복지관	민원상담실, 휴게음식점	2대			
3	여성센터	대강당, 다목적실, 2층 출입구, 3층 주차장	4대			
4	장애인목욕탕	1·2층 로비, 지하 주차장	4대			
5	청소년수련관	야외 공연장, 주차장 후문	4대			

라. 공고방법: (재)김해시복지재단 홈페이지(<http://www.ghwf.or.kr>)

### 3. 관련 근거

- 가.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- 나.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- 다.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
- 라. 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 제24조의3(예고내용 등)

### 4. 촬영범위 및 시간: 설치장소 주변 반경 50m 이내 촬영 및 24시간 운영

### 5. 의견제출

위 행정예고(공고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복지재단 경영지원팀으로 방문,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기간: 행정예고기간과 같음

나. 의견제출 내용

- 1)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에 대한 이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 등
- 3) 기타 필요사항 등

다. 의견제출 서식: [붙임 1] 의견제출서 참고

라.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

- 전화: 055-310-8592 / 팩스: 055-336-3131

- 우편: (50811) 경상남도 김해시 신어산길 46, 김해시여성센터 3층 경영지원팀

마. 기타사항

- 1)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- 2) 공청회 개최 계획: 없음